

缺陷製品의 리콜制度 改善 내용

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 7월1일부터 동법시행령과 리콜규정(위해물품 및 용역의 결합 시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)을 시행함 따라서 사업자(제조업자, 수입업자, 3,000m²이상의 대형유통업자)는 자사상품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면 5일 이내에 관할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일반 리콜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반시는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했다.(사망관련 미보고 : 3,000만원, 식중독관련 미보고 : 2,000만원, 안전기준 위반 미보고 : 1,000만원) 다만 식품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그 법을 우선 적용하나 식중독에 관한 리콜의무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지 않아 동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缺陷情報 報告義務 制度

□ 意義

-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 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를 시·도

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

- * 소비자보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인 보고 수리 및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을 시행령에서 시·도지사에게 위임

□ 主要內容

- 報告義務事業者: (i) 제조업자, (ii) 수입업자, (iii) 대형 유통업자 (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근거하는 대규모점포(3000m²)의 업태 중 대형점·백화점·쇼핑센터·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 설치 운영자)
 - (i) 및 (ii)가 보고한 경우 (iii)의 보고 의무는 면제

○ 重大한 缺陷의 範圍

- 물품 및 용역의 통상적 안전성 결여에 따라 (i) 사망, (ii) 골절, 질식, 감전, 화상 등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, (iii) 2인이상 식중독 등이 발생

-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
- “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”을 3주 이상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함
-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

○ 報告 節次

- 결함사실을 알게된 경우 5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 (긴급한 경우는 구술로 자체 없이 보고)
- ※ 결함정보의 보고를 위한 결함 정보의 인지시점을 시정조치책임자(대표) 또는 소속직원이 중대한 결함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알게된 시점으로 함

○ 報告 後 處理節次

- 제품결함 확인절차
 - 시·도지사가 국공립 시험연구소 또는 소비자보호원 등에 시험·검사 및 조사 등을 의뢰하여 위해성을 확인
- 제품결함 확인 후 조치
 - 제품이 결함으로 인하여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하여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하거나 정부의 강제적인 리콜명령 등의 시정 조치 실시

○ 報告 義務 違反 事業者에 대한 措置 (과태료 부과)

- 사망 관련 미보고(3000만원)
-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.

- 식중독 관련 미보고(2000만원)
- 안전기준 위반 관련 미보고(1000만원)
 - ※ 3000만원 한도내에서 시·도지사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경과 등을 참작하여 상기 과태료 부과 기준액의 1/2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

2. 리콜 勸告 制度

□ 意義

- 리콜명령의 경우 위해성 평가기관*의 평가 및 사업자 청문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간이 절차에 의한 권고로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
- ※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 위원회,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평가위원회 등

□ 主要 内容

-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리콜 실시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
-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리콜을 거부하는 경우* 언론에 그 사실을 공표
 - * 당해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시정권고한 조치를 해태하는 경우

- ※ 소비자보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인 리콜권고 업무를 시행령에서 시·도지사에 위임

3. 리콜命令制度의 補完

□ 意 義

- 리콜명령제도를 일반리콜명령과 긴급리콜명령으로 구분하여 리콜제도의 탄력성 제고
 - 一般 리콜命令(현행) :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절차에 따라 시행
 - 緊急 리콜命令(추가) :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시행 (예: 식품 등)

□ 리콜 명령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보완

- 리콜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실시
- 위해물품의 수거·파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되,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거·파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

* 소비자보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인 리콜명령 업무를 시행령에서 시·도지사에 위임

4. 자발적 리콜

□ 주요 내용

-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규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시행령에 시정 계획서의 제출 및 조치결과의 보고 등 구체적 절차를 규정

* 자발적 리콜 관련 사업자의 시정조치 계획 보고 및 조치 결과 수리 업무를 시·도지사에 위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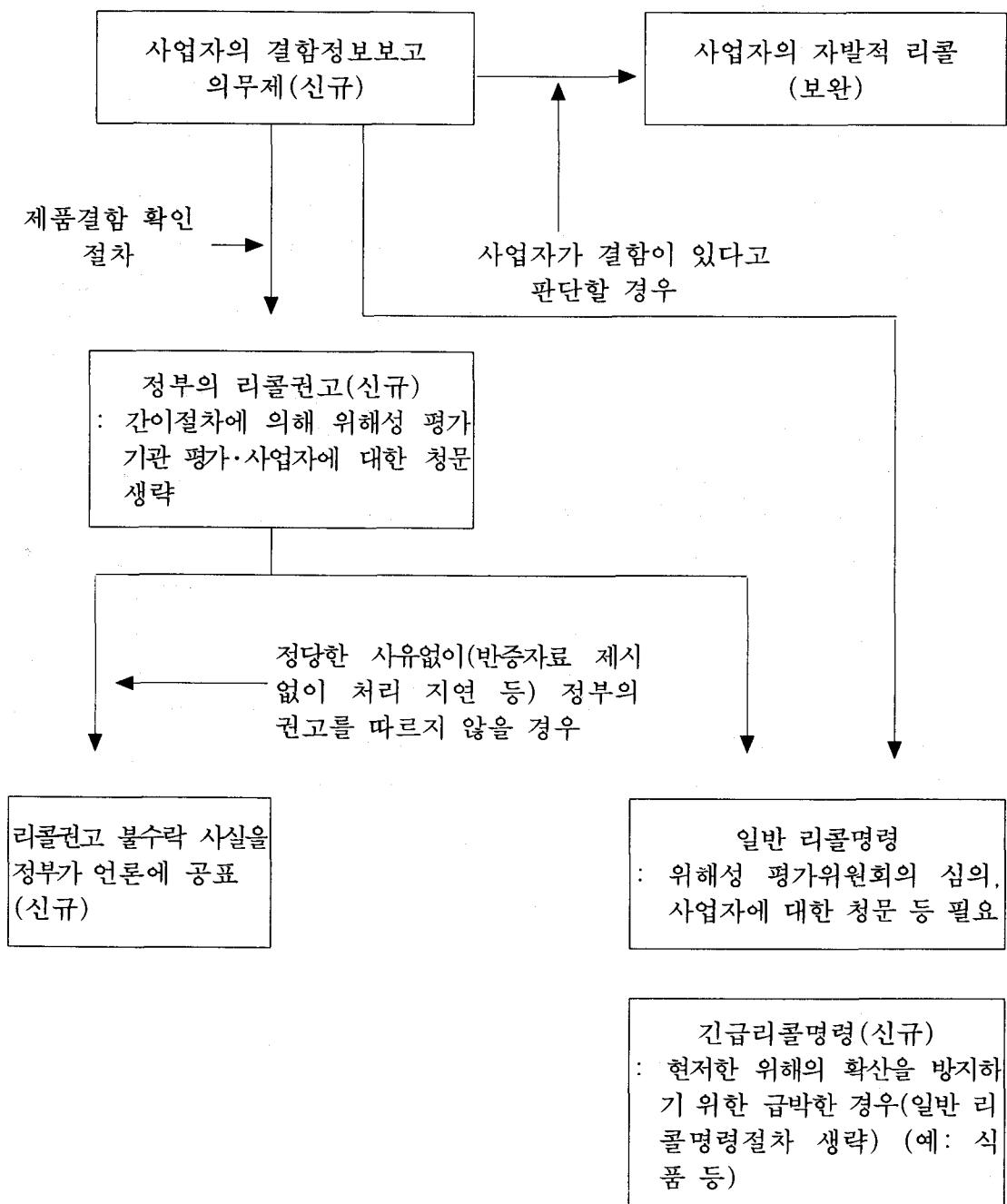
〈참고〉 리콜의 책임자 (2, 3, 4 관련)

- 원칙적으로 물품의 제조자 및 용역의 제공자
- 예외적으로 i) 유통상의 결함, ii) 제조자가 없거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, iii) 제조자의 도산 등으로 책임을 지기 어려운 경우, iv)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는 유통업자에게 책임

〈참 고〉

결합제품 리콜제도 해설

가. 리콜제도의 개념도



나. 리콜제도 비교·분석

구 분	주 체	주요내용	위반시 벌칙	비 고
○ 결합 정보 보고 의무제	- 제조업자 - 수입업자 - 대형유통업자	-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중대한 결함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	- 과태료 • 사망관련 미보고(3000만원) •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, 식중독 관련 미보고(2000만원) • 안전기준위반 관련 미보고(1000만원)	신규
○ 자발적 리콜	- 원칙적으로 제조자이나 예외적으로 유통업자	-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계획서를 시·도지사에 제출하고 조치후 시정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	- 없음	제도보완
○ 리콜권고	- 시·도지사 - 리콜 책임자 • 원칙적으로 제조자이나 예외적으로 유통업자	- 소비자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	- 정당한 사유없이 리콜을 거부할 경우 시·도지사가 당해 사실을 공표	신규
○ 리콜명령 (일반 또는 긴급 리콜 명령)	상 동	- 리콜권고와 절차에 있어서 차이 • 위해성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청문절차 필요	-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	제도보완